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이사회 귀중

監 査 報 告 書

2022회계연도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붙임

1. 법인 감사보고서(일반업무회계·수익사업회계)
2. 대학교 감사보고서(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 감사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의 피감사자(임회인) 서명
날인은 법인 : 사무국장, 대학교 : 재무처장, 부속병원 :
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법인:
이사장·대학교:총장)으로 할 수 있음.
-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별지 제9호서식의
1호)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대재 81423-232:
2003.2.25)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으로 같음함.

학교법인 단국대학

단 국 대 학 교

(별지 제1의1호 서식)

학교법인 단국대학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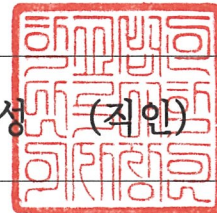
(회계연도: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지 적 사 항 없 음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 장 호 성 (직인)



(법인 일반업무회계 · 수익사업회계)

(별지 제1의2호 서식)

단국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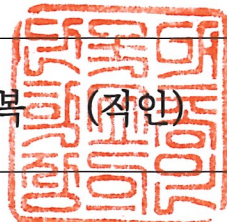
(회계연도 : 2022 년 3 월 1 일부터 2023년 2 월 28 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지 적 사 항 없 음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피감사기관장 단국대학교 총장 김 수 복 (직인)



(교비회계 · 부속병원회계)

(별지 제1호 서식)

감사보고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단국대학(단국대학교)의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단국대학(단국대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 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지적사항 없음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지적사항 없음
3. 학교 관련				지적사항 없음
4. 부속병원 관련				지적사항 없음
계				

- 붙임 : 1. 학교법인 단국대학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1호 서식)
2. 단국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2호 서식)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23년 4월 19일

학교법인 단국대학

감사위원장 이원창 (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1433 호)

감사 김영덕 (인)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2023년 4월 19일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 장호성 (인)

피감사 기관장

2023년 4월 19일

단국대학교

총장 김수복 (인)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2022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지적사항 : 없 음

2 0 2 3년 4월 19일

학교법인 단국대학

감 사 이 원 창

감 사 김 영 덕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법인 사무처장

성 명 차 병 권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국대학교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단국대학교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지적사항 : 없 음

2023년 4월 19일

학교법인 단국대학

감 사 이 원 창 이원창 (인)

감 사 김 영 덕 김영덕 (인)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재무관리처 처장

성 명 곽 영 신 곽영신 (인)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